

서울특별시 마포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13-3
----------	------

제출년월일 : 2013. 1.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제정이유

정부의 남북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병행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산업·경제·문화·학술·체육·청소년 분야 등에 관한 남북교류 협력사업 추진에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촉진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며 관련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조)
- 나. 구와 북한의 주민이 공동으로 산업·경제·문화·학술·체육·청소년 분야 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조)
- 다.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 (안 제3조)
- 라. 기금은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주의적 사업,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그 밖의 남북교류협력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조)

- 마.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둠 (안 제9조)
- 바.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함 (안 제10조)
- 사. 위원회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조정,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함 (안 제11조)

3. 주요 토의과제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법률 제9846호)
- 2)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법률 제7763호)
- 3)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조례 제5137호)

나. 예산조치 : 2013년도 예산에 3천만원 반영되었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규제여부 : 해당사항 없음

마. 기타사항

1) 입법예고

- 예고기간 : 2012. 11. 22. ~ 2012. 12. 12.(제출된 의견 없음)

2) 감사담당관 자치법규 부패영향 자율평가 : 권고안 반영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분석과-4170호, 2012.11.16.)

-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 마련 :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신설 및 제15조(위원의 해촉) 제4호 신설

3) 가정복지과 자치법규 성별영향 분석평가 : 원안동의

- 단,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구성 시 전체 위촉직위원의 40%이상 여성 위원으로 위촉 권고

4) 서울특별시 마포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서울특별시 마포구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간의 교류 협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며, 관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남북교류협력의 추진)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남북통일을 대비하고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공동으로 산업·경제·문화·학술·체육·청소년 분야 등에 관한 사업(이하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3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구와 북한의 주민간의 남북교류협력사업 및 인도주의적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2. 기금의 조성 ·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3. 그 밖의 남북교류협력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지원

제5조(기금의 운용 · 관리) ① 기금은 구 금고에 예치 · 관리하되, 여유 자금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고,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② 기금의 운용 ·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제10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기금운용계획
2. 결산보고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기금의 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 ·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남북교류업무 주무부서의 장
2. 기금출납원 : 남북교류업무 담당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증빙 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결산 및 보고)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운용 · 관리에 관한 사항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남북교류협력과 관련이 있는 기관 · 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2.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3. 행정관리국장, 남북교류업무 주무부서의 장
4.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회의원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 · 조정
2.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사항
3.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남북교류협력기반의 조성 및 민간차원 교류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15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 할 수 있다.

1.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품위손상이나 회의 장기불참으로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4. 제14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16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상·하반기로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